

## 학과평가 및 대학 구조혁신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1. 22.

제15차 전부개정 2024. 7. 1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32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학칙」 제3조에 따라 고등교육의 환경과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본교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과대학, 계열, 학과(부) 및 계열·학부 소속 전공 단위의 평가 및 신설, 폐지, 통합, 정원조정, 전공변경, 명칭변경, 소속변경, 계열모집 등 교육편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과”는 계열, 학과(부) 및 계열 또는 학부 소속의 전공 단위를 말한다.
2. “학과평가”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지표에 따라 학과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학과교육만족도”는 「교육만족도 조사 규정」의 학과교육만족도를 말한다.
4. “대학 구조혁신”은 단과대학 및 학과의 신설, 폐지, 통합, 정원조정, 전공변경, 명칭변경, 소속변경 및 계열모집을 말한다(이하 “구조혁신”이라 한다).
5. “학과신설”은 기존에 개설되지 아니한 새로운 학문 분야의 학과를 학과통합 또는 전공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6. “학과폐지”는 「학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서 구조혁신 당해 학년도(구조혁신이 적용되는 학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을 삭제하여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7. “학과통합”은 기존에 개설된 2개 이상의 학과를 1개 학과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8. “정원조정”은 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한다.
9. “전공변경”은 학과신설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학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0. “명칭변경”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지 아니하고 학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1. “소속변경”은 구조혁신 또는 교육편제 조정으로 학과의 소속이 다른 단과대학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12. “계열모집”은 종전의 모집단위를 계열별 모집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3. “입학정원 모집유보”는 교육부의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의하여

「학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모집단위별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14. “t점수”는 학과평가의 점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 $10 \times ((\text{취득점수} - \text{모집단평균점수}) \div \text{표준편차}) + 50$ ”으로 구해지는 값을 말한다.

**제3조(공시정보의 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학과평가 및 구조혁신을 위하여 적용되는 지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에 의하여 공시하는 해당 공시항목의 공시정보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제2장 학과평가

**제4조(학과평가의 실시)** ① 총장은 정원 내와 외의 신입생 충원율(이하 “신입생 충원율”이라 한다), 정원 내와 외의 재학생 충원율(이하 “재학생 충원율”이라 한다), 학과교육만족도 및 졸업생 취업률을 지표로 매 학년도 학과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과평가 지표별 배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생 충원율 : 35%
2. 재학생 충원율 : 35%
3. 졸업생 취업률 : 20%
4. 학과교육만족도 : 10%

③ 계열 또는 학부에 소속하는 학과를 평가하는 경우 제1항의 지표 중 신입생 충원율은 당해 학과가 소속하는 계열 또는 학부의 지표를 적용하고, 그 밖의 지표는 해당 학과별로 각각 적용한다.

**제5조(학과평가점수)**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평가는 다음 표에 따른 지표별 기준일과 계산식으로 한다.

지표명	기준일	계산식
신입생 충원율	학과평가 대상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3월 1일	$((\text{정원 내 입학자 수} + \text{정원 외 입학자 수}) \div (\text{정원 내 모집인원})) \times 100$
재학생 충원율	학과평가 대상 학년도의 4월 1일	$((\text{정원 내 재학생 수} + \text{정원 외 재학생 수}) \div (\text{편제정원} - \text{모집유보인원})) \times 100$
졸업생 취업률	학과평가 대상 학년도의 12월 31일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방식에 의함
학과교육만족도	학과평가 대상 학년도의 학과교육만족도 공시일	만족도 백분위 90점 이상 : 10점 만족도 백분위 80점 ~ 90점 미만 : 9점 만족도 백분위 80점 미만 : 8점

② 학과별 학과평가의 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및 졸업생 취업률의 지표별 평가점수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한 t점수로 한다.

순서	구분	계산방식
1	평균 계산	모집단 평균을 구한다.
2	상·하위 극단값 제외	모집단에서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난 값을 제외한다.
3	최종평균 계산	상·하위 극단값을 제외한 모집단 평균을 구한다.
4	z점수 계산	$z = (\text{지표값} - \text{최종평균}) \div \text{표준편차}$
5	t점수 계산	$t = 10 * z + 50$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t점수의 최저점은 20, 최고점은 80점으로 한다.

2. 학과교육만족도의 평가점수는 제1항의 표에서 정하는 해당 지표의 계산식에 따라 취득한 점수로 한다.
3.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및 졸업생 취업률의 학과별 학과평가의 점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표별 평가점수를 다음 표에 따라 제3조제2항의 배점 비율로 환산한 지표별 배점 환산 점수로 한다.

지표별 배점 환산 점수 = 지표별 평가점수 × 지표별 배점 비율
-------------------------------------

4. 학과별 학과평가 종합점수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표별 평가점수의 총합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교육만족도 평가점수를 더한 점수로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값의 소수점 자리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적용한다.

**제6조(학과평가 등급비율)** ① 학과평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과평가 점수에 따라 평가대상 학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그 등급비율을 정한다.

1. A등급 : 15%
2. B등급 : 30%
3. C등급 : 40%
4. D등급 : 10%
5. E등급 : 5%

②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학과,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담학과 및 「학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자유전공학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평가 등급비율 계산의 평가대상 학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평가 등급비율의 계산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등급비율별 배정된 학과 수의 총합이 평가대상 학과 수보다 많을 때에는 하위등급 배정 학과 수의 순서로 학과 수를 감(減)하여 산정한다.

**제7조(학과의 편제에 따른 적용례)** ① 1개 또는 2개 학년 편성학과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② 3개 학년 편성학과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충원율 45%, 다음 표에 따른 재적생 중도탈락률 45% 및 학과교육만족도 10%를 지표의 배점으로 하여 학과평가를 실시한다.

기준일	계산식
학과평가 대상 학년도 4월 1일	(중도탈락 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③ 4개 또는 5개 학년 편성학과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충원율 45%, 재학생 충원율 45%, 학과교육만족도 10%를 지표의 배점으로 하여 학과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등의 학과평가 특례)** ① 총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및 성인 학습자 전담학과(이하 “전담학과”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학과교육만족도 및 학과 운영의 운영손익의 계산에 의하여 학과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학과의 학과평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장 구조혁신

**제9조(구조혁신의 원칙)** 구조혁신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대학의 교육 및 환경 변화에의 대처
2.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지침의 이행
3. 「대학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장기 발전계획(이하 “대학 발전 계획” 이라 한다) 및 특성화 정책의 이행
4. 대학의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5. 교육부 평가지표의 대응 및 향상

**제10조(구조혁신의 시행)** ① 구조혁신은 총장이 매 학년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서 규정하는 구조혁신의 원칙에 비추어 당해 학년도에는 구조혁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혁신의 시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대학구조혁신위원회의 설치)** 구조혁신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총장 소속하에 대학 구조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총장, 교무연구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2. 구조혁신 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위원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은 자신이 속한 학과가 구조혁신 대상 학과에 해당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대학 및 학과의 장 또는 소속 교원과 학생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이 위촉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구조혁신의 기준)** ① 구조혁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학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한다.
1. 반영하는 학과평가 학년도 : 구조혁신 당해 학년도의 전전(前前) 학년도를 포함한 이전 3개 학년도 학과평가
  2. 반영하는 학과평가 점수 : 제1호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3개 학년도 학과평가 점수를 평균한 점수
  3. 적용하는 학과평가 등급비율 : 제2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평가의 등급별 비율
- ② 학과신설은 특성화 분야, 지역사회 연계 분야, 수요자 선호 분야 및 학생모집과 취업에 경쟁력이 있는 전략 육성 분야로 한다.
  - ③ 계열모집은 대학 발전계획, 정부의 대학정책, 교육환경의 변화, 특성화 방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학과평가 등급별 구조혁신 조치)** 제14조제1항의 구조혁신 기준에 따른 학과평가 등급별 구조혁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등급 학과 : 구조혁신의 권고
2. D등급 학과 : 학과폐지, 학과통합, 전공변경 또는 정원조정의 구조혁신 조치 시행
3. E등급 학과 : 학과폐지의 구조혁신 조치 시행

**제16조(학과의 편제 등에 따른 적용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는 구조혁신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학과가 스스로 구조혁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조혁신 당해 학년도의 전전(前前) 학년도까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학과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학과
2. 구조혁신 당해 학년도의 전전(前前) 학년도까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학과평가를 하는 학과
- ②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과 정원 50명을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정원이 배정(증원에 한한다)된 학과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과에 대해서는 학과폐지, 학과통합 또는 전공변경의 구조혁신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 ③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화 방향,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따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서는 학과폐지의 구조혁신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 ④ 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혁신 당해 학년도 직전 2개 학년도의 신입생 충원을 평균이 제15조제2호의 D등급에 속하는 학과의 신입생 충원을 평균에 미달하는 학과에 대해서는 학과폐지, 학과통합 또는 전공변경의 구조혁신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전담학과의 구조혁신)** ① 총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학과의 학과평가 결과 3개 학년도 학과교육만족도 및 운영손익에 의하여 전담학과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5조의 학과평가 등급별 구조혁신 조치에 준하는 구조혁신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학과의 구조혁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구조혁신 조치에 관한 특례)** ① 총장은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대학 발전계획, 특성화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정원 모집유보를 포함하여 제14조제1항에 의한 구조혁신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혁신을 하는 때에는 종래 학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학정원의 모집유보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의한다.

**제19조(구조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조혁신은 기획처장이 관장한다.

② 기획처장은 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조혁신 기본계획을 매 학년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내외 교육 환경 및 여건
2. 전 학년도 구조혁신의 성과와 한계
3. 대학 발전계획 및 대학 특성화 방향
4. 학과평가의 결과
5. 대학 구조혁신의 기본방향과 전략
6. 구조혁신의 일정
7. 그 밖에 구조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사항

**제20조(의견제출 등)** ① 기획처장은 구조혁신에 필요한 의견과 자료(이하 “의견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관계 행정부서·대학·학과·대학원·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등(이하 “행정부서등”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행정부서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처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의견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등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기획처장은 구조혁신을 위하여 구성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구조혁신의 확정시행)** 구조혁신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제31조 및 정관시행세칙 제3조(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4장 보칙

**제22조(우수학과에 대한 지원)** 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평가 등급이 A등급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수지가 현저히 양호한 전담학과에 대하여 정원조정(증원), 교원 충원, 특성화 학과 선정, 실험실습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배정, 학과운영비 증액 등 특별예산 지원 등의 행·재정지원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폐지된 학과의 교원 및 재적생에 대한 조치)** ① 총장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폐지, 학과통합 및 전공변경의 구조혁신 조치의 시행 또는 대학 정책에 따라 다른 학과로 소속이 변경되는 교원에게는 「교수 연구년제 시행 규정」에 의한 연구년 및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의 기회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한 교내연구비를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구조혁신 조치의 시행에 의하여 소속 학과가 없어진 교원에 대하여 소속변경,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다른 학과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경영개선협약의 체결)** ①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 평가 등급이 D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수지가 현저히 낮은 전담학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목표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2.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향상 방안
3. 학과교육만족도 향상 방안
4. 외래강사 수의 합리적 조정
5. 전담학과의 운영손익 개선 방안
6. 그 밖에 학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②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평가 등급이 C등급에 해당하는 학과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손익의 개선이 필요한 전담학과에 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영개선계획서의 제출 요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학과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경영개선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 또는 교원에 대하여 「연구비 관리규정」에 의한 교내연구비의 지급 제한 등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영개선계획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경영개선협약의 체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경영개선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현저히 대만하는 경우
4. 경영개선협약의 성과 목표의 달성이 매우 불충한 경우

**부칙 (기획예산팀-1558, 2024.07.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30학년도 구조혁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22조 및 제24조는 2026학년도 학과평가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은 202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까지의 구조혁신의 시행은 종전의 「대학 구조혁신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